

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하남시장(자치행정과)

제출일 : 2021. 8.

1. 제안이유

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(2021. 6. 23. 시행)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, 정보공개청구 서식 변경,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확대 등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공개기관의 의무로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(안 제3조)
- 나. 정보공개청구 서식 변경(안 제7조)
 -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작성하여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
- 다. 정보공개심의회 당연직 위원수를 축소(3명→2명) (안 제12조)
- 라. 정보공개 업무처리 시 청구인에 대한 안내 추가
 - 비공개 결정 시, 법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안내(안 제8조)
 -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시, 미개최 사유 문서 통지(안 제13조)

3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1년 6월 23일 시행된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 취지인,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,
-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